

의안 검토 보고

의안 번호	제 69 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1999. 5. 2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재근		

1.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이 조례는 구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나 관광진흥법과 중복되어 존치필요성이 없고, 관광진흥법 전문개정 ('99.1.21)으로 조례위임사항이 없어져 폐지함.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함.

다. 참고사항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35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의사항 : 제3차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99. 4.21)
- 기타

2. 검토결과

- 본 폐지 조례안은 구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과징금부과에 대한 단서 규정에서 “권한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과징금을)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등 관광사업에 대한 각종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관광사업의 변화 발전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이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의 관광사업으로 이관되는 등 ‘99. 1.21 법률 제5654호로 관광진흥법이 전문개정 되었으며, 법령위반시 과징금부과에 관한 내용이 동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되었고,
- ‘99. 5.10 대통령령 제16295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고 동 시행령 제35조에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자치단체 조례 위임근거 규정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참고사항

- 종 전 관 광 진 흥 법 : 제19조제3항
- 현 행 관 광 진 흥 법 : 제35조
- 현 행 관 광 진 흥 법 시행령 : 제35조

〈 관계법령 〉

증전관광진흥법

제19조(과징금의 부과)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권한이 위임(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94. 8. 3)

현행관광진흥법

第35條 (課徵金의 賦課) ①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觀光事業者가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利用者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기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현행관광진흥법시행령

제3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기관등의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 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 편 기 획 제 3 장 문화공보

●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

징수조례 [1995. 9. 22]
[조례 제300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징수하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징금 부과 및 납부통지)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 별표1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2분의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조 (과징금의 납부연기)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화재 및 도난등의 재해를 당하여 과징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2.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를 입어 과징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 4 조 (가산금 및 독촉) ①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 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강제징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한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

제 2 편 기 획 제 3 장 문화공보

여야 한다.

제 6 조 (과징금처분대상) 구청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때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